

1

모두의 학교를 위한 '학교문화 책임규약'의 이해

가 모두의 학교를 위한 '학교문화 책임규약'이란?

◆ 개념

- 학교 구성원(학생, 보호자/학부모, 교직원)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,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
 - '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내용 및 책임', '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'에 대한 내용 확인
 -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구성원별(학생, 보호자/학부모, 교직원)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확정
 - 학교 구성원이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체결(예: 서명, 손도장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)

여기서 잠깐! !

- ✓ 모두의 학교를 위한 '학교문화 책임규약'은 규약 체결을 통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,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생각을 모아 협력하고 연대하여 실천을 다짐하는 활동입니다.
- ✓ '학교문화 책임규약'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 또는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, 단순한 책임규약 체결을 넘어 교육, 구성원별 의견 수렴,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(규약서에 서명 요청만 진행하는 것은 지양)

◆ 도입 배경 및 목적

[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('23.4.12.)]

3.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
 - 4)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
- (학교폭력 책임계약) 학생·학부모가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'학교-학생·학부모' 간 책임계약을 맺고 실천

※ 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부터 학교폭력 책임계약 대신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명칭 변경

- 학교폭력의 정의·유형, 조치사항(9개), 학교장 긴급조치 등 「학교폭력예방법」의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"학교-학생·학부모" 간 계약서 체결
※ 학부모의 예방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 및 이행 실효성 제고
- 학교폭력 대응 선도학교 운영('23. 200교 → '25. 전국), 교원단체와 캠페인·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확산

• 도입 배경 및 필요성

- 학교폭력 증가 및 유형의 다양화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추세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가 부족하며, 구성원 간 소통 및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및 책임 의식 부족
 -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가 학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 인식하고,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연대할 때 긍정적인 결과 도출 가능
 -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를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해결하기보다 학생, 보호자/학부모, 교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려는 실천적 노력 필요
 -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학교를 작은 사회*로 인정하며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
- * 티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, 내부의 규범과 규칙에 맞춰 생활하는 사회의 축소판

나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

◆ 추진 방향

-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, 학교행사 등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도 제고
- 학교 여건에 따라 참여 대상 및 운영 방법, 규약서 서식 및 서명 방법(전자서명, 직접서명) 등 결정
-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목적에 맞게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생, 보호자/학부모, 교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
- 학생, 보호자/학부모, 교직원 대상 '취지 및 방향 안내, 의견 수렴,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'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학교 구성원이라는 인식 제고

◆ 주요 내용

- (필수포함 내용)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, 가해학생 조치사항(9개), 학교장 긴급조치, 피해 및 신고 ·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,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,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(학칙 및 의견수렴 반영),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(아래 파란색 부분 해당)

- **(책임규약의 목적)** 학교 구성원들에게 취지 및 목적, 방향 안내
- **(학교폭력 이해도 제고)** **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**, 학교폭력 목격·발생 시 행동 요령(신고, 도움요청 등), **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(학기별 1회)** 및 참여 요청
- **(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)** 「**학교폭력예방법**」상 가해학생 조치사항, 학교장 긴급조치, 피해 및 신고·고발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등 학교폭력 가해 시 발생하는 책임 사항
- **(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)**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(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·훈계) 존중,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,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참여, 보호자의 책임 강화 등
- **(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)**
 - (학생) 학칙 준수, 타인(교직원 및 다른 학생) 존중 및 배려, 가해행위 금지,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 등
 - (보호자/학부모)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·대응 교육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 존중 등
 - (교직원)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, 학생 참여·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,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·적극 대응 등
- **(책임규약 실천을 위한 다짐 및 서명)**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규약 실천을 위한 다짐 및 서명

여기서 잠깐! !

- ✓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의 필수포함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교육청 및 학교의 계획에 따라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필수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순서 등은 학교급·학년 등 학생의 인지적·정서적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.
- ✓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**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면담 참여**도 다음과 같은 예시로 안내 가능합니다.
 - **(학교폭력 전담 조사관)**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된 경우, 피·가해학생 및 목격학생 또는 보호자 등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